

자조금의 의의와 성격

그동안 축산업계의 관심거리였던 자조금제도의 실시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안중에 포함돼 통과되어 자조금제도 실시가 가시화되었다.

이에 자조금제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실시되는가를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자조금의 유래와 의의

가. 자조금의 유래

자조금은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급여중에서 일부분을 조합비로 자동공제(check-off)하여 조합의 활동비용으로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체크오프라는 용어를 단순히 공제의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고 자진행위 또는 자체조정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체크오프시스템(check-off system)을 「자조금제도」라고 한 이유는 수혜당사자가 공동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며 흔히 self-help system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원래의 개념에 따르면 비자발적인 강제징수는 제외된다. 법제화가된 의무적 자조금제도(mandatory check-off system)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조금을 법에 의해 강제로 징수하되 대부분의 경우 반환규정을 두고 있다.

나. 자조금의 의의

자조금제도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광의의 자조금이란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을 말하며, 여기에는 각 단체의 회비, 부조금, 기부금, 잠부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우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각종 단체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비롯하여 양돈협회와 양계협회의 홍보비, 유가공협회의 공동홍보비, 기타 자생단체의 각종 부과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협의의 자조금이란 법정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징수하여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이며 일반적으로 자조금은 협의의 의미를 가진다.

법정규정에 의한 자조금을 법정자조금 또는 강제자조금(mandatory check-off fund)이라 하고 법정규정

이 전제되지 않고 집단의 결의에 스스로 납부하는 형태의 자조금을 임의자조금(voluntary check-off fund)이라 한다. 법정규정의 경우에도 집단구성원 대 다수의 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자조금의 제도의 목적

자조금은 그 집단의 공동이익, 즉 집단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전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성, 사용되는 자금이다.

자조금제도의 주요 목적은 첫째,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둘째, 연구사업, 셋째, 소비자 및 생산자 교육이다. 물론 산업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산확대 또는 조절, 수급의 안정, 가격의 안정, 유통개선 및 소비확대 등이 있으나 소비확대 또는 촉진목적 이외에는 생산자들의 큰 부담없이 성취되기 힘들며 이들은 보통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요 목적 중에서 산업에 따라서는 생산자들의 큰 부담없이도 자조적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컨대 일본 양계산업의 경우 란가안정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생산자의 부담이 크지도 않으면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유통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내 대부분 산업에서는 그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연구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조정, 가격안정 또는 지지 등은 정부에서 국가전체적 차원으로 해결되고 있다.

3. 자조금제도의 성격

가. 자조금의 성격

합법적 절차에 의한 산업기금 : 자조금을 공평, 용이하게 거출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자의 결의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입법화하고, 산업의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목적기금으로 준조세적 성격이다.

수익자의 공평한 자체부담금 : 수익의 크기는 구성원 각자의 사업양에 비례하므로 부담도 사업양에 비례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자조금은 이익에 대한 대상인 요금(charges, rates, fees, fares)서비스에 대한 보상인 수수료(commission, charges, brokerages), 친목도모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비(fees, dues)의 성격을 포함한 개념이다.

생산자의 자진부과금 : 이익집단(생산자집단)의 특정활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집단구성원의 비용부담을 자진 의무화하는 법적 부과금(levy)또는 할당금(assessment)이다.

나. 자조금제도의 성격

무임편승자의 배제 : 자조금의 효과 또는 혜택은 당해 산업의 구성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자조금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무임편승자를 배제한다.

모든 물량이 거래되는 제도적 거점에서 자동공제 : 구성원의 자진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거출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물량이 거래되는 제도적인 거점이 있어야 한다.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 특정이익집단의 자조금은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강한 조직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의 운용에도 민주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극소액 부담의 원칙 : 수익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생산자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가능한 극소액을 부과한다.

민주적 관리운영과 견제기능 보유 : 자조금제도의 실시시 민주적 방법에 의해 제도화하고 관리운영함과 동시에 자조금제도의 기본성격상 제도의 실시과정에 있어서도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견제하기 위해 보통 반환규정과 일종의 신임투표규정이 포함된다.

장기적 계획에 의한 사업수행 : 소비촉진 및 연구 개발 등은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완만히 성취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 미국의 자조금제도

가. 낙농부문

1) 근거법규

미국의 낙농부문에서 의무적 자조금제도를 실시하게 된 근거법규는 1983년 11월 29일 제정된 「낙농 및 연초조정법」(Dairy and Tobacco Adjustment Act:DTAA)내 부제B-낙농소비촉진 프로그램이다.

DTAA가 제정되기 전 1915년부터 생산자 단체에서 소비촉진과 연구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왔다. 1915년 생산자와 거래업자 그룹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낙농위원회(National Dairy Council:NDC)에서 우유에 대한 영양교육과 연구를 해 왔다. 또한 1940년에는 미국낙농협회(American Dairy Association:ADA)에서 상품광고 및 홍보활동과 상품과 시장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1969년 ADA에서 상품연구부문이 분리되어 낙농연구소(Dairy Research, Inc:DRINC)가 별도로 설립되었다.

1971년 미국낙농업협회(United Dairy Industry Association:UDIA)가 설립되어 NDC, ADA 및 DRINC가 그 산하조직으로 됐다. 1979년 UDIA예산은 780만달러로 이 중 ADA, NDC, DRINC예산은 각각 300만, 210만, 65만 4천달러로 이 중 UDIA자체 예산은 200만달러였다.

1979년 UDIA는 42개 주에 걸쳐 20개 회원 조직이 있으며 37개지부 낙농협의체가 있다. 그러나 극서부의 캘리포니아·오래곤·워싱턴(COW)과 위스콘신은 UDIA에 불참하고 있다. COW Board는 부과금도 높으며 참여율도 높아 예산이 많다. 캘리포니아의 생산자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의 예산은 1,300만달러이며 오래곤과 워싱턴의 낙농생산위원회의 예

산은 각각 110만달러와 250만달러이다.

1970년 우유의 최고 생산자인 위스콘신의 낙농위원회는 1979년 예산이 170만달러이다. 1979년 UDIA, COW 및 위스콘신 ADA 에서 낙농제품의 소비촉진에 투입된 총금액은 6천만달러이다.

낙농부문 자조금제도의 법률 시행령은 1984년 5월 1일에 발효된 「낙농소비촉진 및 연구명령」(Dairy Promotion and Research Order:DPRO)이다.

2) 운영주체 : 전국낙농품 소비촉진 및 연구위원회

가) 설립, 구성 및 임기

36인의 위원이 있으며 48개 주를 1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우유의 생산규모 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수를 할당한다. Board는 3~5년마다 전체지역의 지역적 우유생산규모를 심사하여 위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단 최초의 위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 2, 3년으로 하며 매년 4월 30일이 임기만료일이며 연임은 금지된다.

나) 추천 및 임명

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음이 의법 인정된 조직' 즉 유자격생산자단체(eligible organizations)에게 최초위원회의 위원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그런 조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농민조직에 위원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최초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장관은 위원의 임기만료 120일전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장관에게 추천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유자격 생산자 단체가 1개이상 있는 지역은 협의 또는 공동으로 추천해야 하며, 만약 협의 또는 공동추천이 어려울 경우엔 각각의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추천한다.

생산자 단체에 의해 위원으로 추천된 자는 서면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장관은 추천된 자 중 규정에 의해 위원을 임명한다.

다) 의결 및 보수

위원회의 회의소집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위원회는 회의소집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행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우편, 전화 및 전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역시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아 때 모든 위원은 투표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효력은 회의소집시와 동일하다.

위원의 보수는 무보수이며 의무 및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은 지불된다.

라)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위원회의 권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유 및 낙농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과 연구 및 영양교육의 계획을 접수, 평가 또는 자체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장관에게 건의함.
- 규정의 위반사항 및 불평사항을 접수, 조사하여 장관에 보고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정보의 전달
- Board의 구성원으로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Board위원 이외의 사람들도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음.
- 장관에게 규정의 수정을 건의할 수 있음.

위원회의 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년1회 이상의 회의소집
- 위원중 우유생산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Board의 지침과 정책안에서 규정의 집행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함. 또 이를 위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음.
- 우유 및 낙농제품의 소비촉진에 관한 프로그램을 심의하여 장관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함.
- 예산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
- 장관의 감사에 대비한 서류의 보관과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출
- 회의소집시 장관에게 회의일정을 보고해야 함.

-계획간 조정

-규정에 따른 업무의 관리와 이를 위한 규칙의 제정

마) 비용

위원회는 그 유지에 필요한 경비와 권한 및 의무 수행상 필요한 경비는 쓸 수 있으나 총계획예산에서 5%를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련된 농무성의 경비를 장관에게 지불해야 한다.

3) 부과금 규정

미국에서 생산되어 상품으로 유통되는 우유를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거래업자는 생산자로부터 15센트/cwt를 수집하여 Borad에 송금해야 한다.

만약 첫번째 부과금이 거출되는 날 Board가 구성되지 않으면 농무장관이 Board 대신 부과금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장관은 Board가 구성되면 부과금을 송금해야 한다.

부과금의 송금의무자는 우유이 거래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Board에 송금해야 한다.

연체에 대해서는 1.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금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달러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Board에 수집된 어떤 기금도 정부정책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4) NDPRB의 구조 및 사업

NDPRB는 낙농생산자 단체로부터 추천되어 농무 장관에 의해 임명된 3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추천을 목적으로 전국을 13개지역으로 나누는 데 위스콘신 지역의 위원은 6인으로 가장 많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최초 위원의 임기는 비례적으로 1년, 2년, 3년이다. 그러므로 위원의 3분의 1은 매년 교체되며, 모든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은 무보수로 봉사하며 실경비는 지급받는다. 시행령에는 위원중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으

나 최초의 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중 4명의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재무담당)을 선출하며 NDPRB의 주요 프로그램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조직한다.

NDPRB는 24명의 스태프를 감독하는 최고집행관을 두고 있다.

거의 모든 NDPRB의 수입은 미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우유에 대해 15센트/cwt의 의무적인 부과금으로부터 충당되며. 생산자는 주 소비촉진 프로그램에 불입하기 위해 10센트/cwt까지 신용대부(credit)를 받을 수 있다. 이 신용대부 때문에 Board의 순부과금은 1984~85년에는 6.04센트/cwt정도였고, 1985~86년에는 5.91센트/cwt였다.

Board의 지출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지는데 그것은 광고 및 판매촉진, 영양연구 및 교육, 상품연구 및 개발, 그리고 기타 활동이며 광고 및 판매촉진에 대한 지출은 가장 큰 지출항목으로 1986~87년 Board의 총지출의 75.9%에 달한다. 또한 영양연구 및 교육 지출의 비중은 10.2%이며 상품연구 및 개발과 기타 활동의 비중은 각각 5.6%와 8.3%이다.

1984~85년부터 3년동안 지출 경향을 보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광고 및 판매촉진 지출이 1984~85년 92.2%에서 다소 줄어들어 1986~87년에 75.9%의 비중이 되고 동시에 다른 지출이 증가되었다. 예컨대 영양연구 및 교육에 지출된 금액의 비중은 3.6%에서 10.2%로 급증했으며 상품연구 및 개발에 지출된 금액의 비중은 0.2%에서 5.6%가 되었다.

Board는 시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무지방분유 및 낙농제품(칼슘함유)의 제품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1984~85년에서 1986~87년까지 처음 3년간 광고지출의 평균 비율은 치즈의 경우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낙농제품(칼슘함유), 시유, 버터, 아이스크림의 경우 각각 25%, 23%, 10%, 7%이며 분유의 경우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유의 광고프로그램은 두 가지 즉 어린이용 광고

와 젊은 층 광고로 나누어지며 1986~87년 어린이용 광고에는 Board의 시유예산 1,300만 84달러 중 42%이며 젊은 층 광고는 58%였다.

영양 교육활동은 주로 식사에서는 칼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84~85년에는 건강전문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칼슘프로그램을 시작하여 200만 달러를 투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건강전문가와 소비자를 위해 텔레콤, 슬라이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칼슘정보프로그램, 건강관련 잡지, 신문에는 칼슘광고, 뉴스레터의 발행·배포 등이 포함된다.

Board는 영양연구를 위해 처음에 42개 프로젝트에 260만달러를 투입하였으며, 1986년에는 그중 8개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으며 17개 프로젝트가 추가되었다. 51개의 프로젝트에는 총 330만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주로 칼슘과 관련된 연구이다. 1986년 51개 프로젝트중 41개가 칼슘과 관련된 프로젝트이며 연구는 44개 대학과 의학협회 및 유명 병원에서 행해진다.

상품연구 및 개발분야에서는 신제품 개발 및 가공법 개발 등이 행해지며 프로젝트는 주로 발효법, 저온가공법, 품질보증, 생물공학 등에 관한 것이다.

나, 우육부문

1) 근거법규

미국의 우육부문에서 의무적인 자조금 제도를 실시하게 된 근거법규는 1985년 12월 23일 제정된 「우육 소비촉진 및 연구법」(Beef Promotion and Research Act:BPRA)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전국 육우사육자협회(National Cattlemen's Association)에서 오랫동안 법적인 뒷받침없이 자발적으로 실시해 왔다. 1976년 「우육연구 및 정보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생산자의 찬반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였다. 1979년에는 투표규정을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어, 1980년 재투표한 결과 이때에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였다.

우육부문 자조금제도의 법을 시행령은 「우육 소비 촉진 및 연구명령」으로 1986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그 제정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1985. 12. 23 : 미농무성 농업유통국은 BPRA에 의거, 전국적인 우육소비촉진 및 연구프로그램과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수립의 권한을 부여받음.
- ② 1986년, 2. 14 : AMS는 우육 소비촉진 및 연구명령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토록 공고함.
- ③ 1986. 3. 14 : 공개토론을 위한 육우산업의 안을 접수함.
- ④ 1986. 4. 17 : 제안된 안의 폭 넓은 이해와 논평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함.
- ⑤ 제안된 안, 공개논평, 공청회 자료 및 기타 자료 등을 평가, 수정하여 최종안을 채택함.
- ⑥ 1986. 7. 18 : 부과금 조항을 제외하고 효력발생함.
- ⑦ 1986. 10. 1 : 명령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됨.

2) 운영주체

가) 우육 소비촉진 및 연구위원회(Cattlemen's Beef Promotion and Research Board, CBPRB)

① 설립, 구성 및 임기

전국을 41개 지역단위와 1개 수입업자 단위로 나누며, 위원수는 각 단위에 따라 다르며 사육두수가 50만~149만일 때 1명, 150만~2050만일 때 2명 등이다. 1986년 1월 1일 수입업자 대표 5명을 포함하여 총 113명이다. 그 중 텍사스주는 14명으로 전체의 12.4%를 점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과 규정에 준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농무성 장관이 임명한 육우생산자와 수입업자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에 따라 2년 내지 3년마다 전국의 소 사육두수 지역적 분포와 수입 규모를 심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단위를 재조정하고 위원수 배분을 수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최초 위원회의 임원은 비례적으로 1, 2, 3년으로 하며 동일지역

단위의 위원 임기는 년차별로 한다.

각 위원은 장관이 후임자를 임명할 때 임기가 만료되며 연임은 할 수 없다.

② 추천 및 임명

추천권은 '장관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원 즉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음'의 범법 인정된 조직' 즉 유자격 생산자 단체에 주어진다. 만약 장관이 어떤 지역 단위에 유자격 생산자단체가 없다고 결정하면, 장관은 그 지역단위에 거주하는 생산자나 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업자 단위의 대표는 소, 우육 및 그 생산물을 수입하는 조직 또는 개별 수입업자에 의해 추천된다.

최초의 위원회가 설립된 후, 농무성은 공석이 있음을 공시해야 한다.

그 후의 위원 추천은 구성원의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산자를 대표하는 유자격 생산자 단체가 둘 이상일 경우 단체간의 협의 또는 공동으로 추천하며 만일 협의의 또는 공동 추천이 안 될 경우 각각의 단체는 그 지역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독자적으로 장관에게 추천한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서면동의서를 추천시 장관에게 첨부 발송해제 한다.

장관은 추천된 자 중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며 동위원회의 위원은 연방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의결 및 보수

위원회의 위원소집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위원회는 위원소집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행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우편, 전화 및 전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역시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때 모든 위원은 투표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효력은 의회소집시와 동일하다.

위원의 보수는 무보수이며 의무 및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은 지불된다.

④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위원회의 권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규정에 다른 업무의 관리와 이를 위한 규칙제정

-규정의 위반사항 및 불평사항을 접수, 조사하여 장관에 보고

-사업활동의 규칙 채택

-규정의 수정을 장관에 건의

위원회의 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년 1회 이상의 회의소집

-위원장중 위원장, 부위원장, 재무담당 및 필요 임원의 선출, 구성

-위원장중 9~11인의 집행위원회 구성, 이 때 소사육두수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야함. 위원회(Board)의 부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재무담당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됨.

-위원회(Board)의 지침과 정책안에서 규정의 집행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함.

-우육소비촉진운영위원회 위원 20인중 10인의 대표를 선출함. 나머지 10인은 연방위원회(Federation Board)에서 선출함.

-우육소비촉진운영위원회(BPOC)에서 작성,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여 장관에게 제출함.

-BPOC의 예산을 포함한 Board 전체의 예산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함.

-장관의 감사에 대비한 서류의 보관과 년차보고서의 제출

-총부과금의 15% 이상을 반환청구(refund)에 대비해 준비해 두며 반환청구에 대해 이행을 해야 함.

-매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함.

-회의소집에 대해 장관에게 통고하여 장관 또는 대리자가 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시장에서의 우육산업의 위치 강화와 국내외의 시장확대를 위해 고안된 소비촉진, 연구, 소비자정보 및 산업 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함.

⑤비 용

위원회(Board)는 그 유지와 필요한 경비와 권한 및 의무수행상 지출되는 경비를 쓸수 있으나 회기년도의 총계획예산에서 5%를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련된 농무성의 경비를 장관에게 지불해야 한다. 우육 및 우육제품의 해외시장 유지와 확장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우육 소비촉진 운영위원회

① 설립, 구성 및 임기

BPOC는 20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0인은 Board에서 선출되며 10인은 연방정부에서 선출된 생산자이다.

Board 대표 10인에는 Board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재무담당자가 포함되며, 나머지 7인은 소사육 두수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Board에서 공정하게 선출된다. Federation 대표 10인에는 연방위원회의 의장, 부의장이 포함되며 나머지 8인은 역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출된다.

Board의 의장은 Committee의 의장이 되며, Federation의 의장은 Committee의 부의장이 된다. 또한 Board의 재무담당자는 Committee의 재무담당자가 되며 기타 필요한 인원은 Committee에서 선출 또는 지명할 수 있다.

BPOC의 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금지되어 있다.

② 의결 및 보수

위원회의 회의시 의결정족수는 15인 이상이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무보수이며 의무 수행상 필요한 경비는 지불된다.

③ 위원회(BPOC)의 권한 및 의무

위원회의 권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육 및 우육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과 연구, 소비자 정보 및 생산정보의 계획을 개발, 평가하고 이를 장관에서 건의함.
-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사무활동에 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음. 또한 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의 활동을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있음.

위원회의 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소비촉진, 연구 및 소비자 정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비영리단체와 계약 함. 또한 Board 회원에게 정보를 전달해 줌.
- 사업 및 예산을 작성하여 Board에 승인을 요청하며 장관에게 제출함.
- 매년 활동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함.
- 회의소집을 장관에게 공고하며 계획간 조정함.

3) 부과금(Assessment)규정

가) 생산자 부과금

생산자로부터 소를 구입하고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생산자로부터 부과금을 수집하며 두당 1달러이다. 수집업자는 Board 또는 주우육위원회로 수집된 부과금을 송금해야 한다.

생산자가 직접 또는 소매·도매경로를 거치거나 수입목적으로 우육 또는 우육제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두당 1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Board나 주우육위원회로 송금해야 한다.

부과금의 송금책임자는 판매전의 소 사육지 주의 주우육위원회로 부과금을 송금해야 하며, 만약 그 주내에 주우육위원회가 없으면 Board에 직접 송금해야 한다.

Board는 장관의 승인하에 주우육위원회로 하여금 "State of Origin Rule"에 다르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는 주우육위원회간 부과금의 수집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State of Origin

Rule"이란 소가 販賣될 때 위치한 주 또는 판매목적으로만 주간 수송될 때 판매전에 위치한 주를 의미한다.

부과금은 소가 거래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송금되어야 한다.

나) 수입업자 부과금

생우, 우육 및 우육제품의 수입업자는 미관세청(U.S Custom Service) 또 장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Board에 부과금을 송금해야 한다.

생우의 부과금은 두당 1달러이며 우육 및 우육제품의 부과금은 파운드당 20~38센트이다.

수입업자로부터 수집된 부과금은 협상기구를 통해서 주우육위원회와 Board에 적절히 배분된다.

4) 반환 및 과태료 규정

부과금을 낸 생산자나 수입업자는 소비촉진 및 연구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Board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Board에 승인된 반환청구 형태에 의해 주우육위원회나 Board에 서면으로 청구함.

② 반환청구자는 부과금이 거출된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우송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청구자의 성명과 주소, 수집업자의 성명과 주소, 판매두수, 청구총액 부과된 날짜 등을 기입해야 함.

③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반환청구에 대한 조치를 취함.

부과금의 납부지연에 대한 과태료(Late-Payment Charge)는 매달 2%씩 임.

